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미래) 의학과 운영내규

제 정 2010. 3. 1.
개 정 2025. 7. 1.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운영내규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칙의 범위 내에서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미래) 의학과(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공)
대학원의 전공은 ‘의생명과학트랙’, ‘임상의학트랙’, ‘응용의학트랙’, ‘의학교육학트랙’으로 구성한다. 단, 융합형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참여 대학원생의 전공은 의생명과학트랙 또는 응용의학트랙으로 준하여 구성하되 별도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

제3조 (주임교수 및 책임교수)
대학원 주임교수 및 트랙책임교수는 원주의과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4조 (업무)
대학원의 업무는 교학파트에서 수행하며, 주요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5조(지도교수 · 심사위원 자격)
① 교수, 부교수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로 한다.
② 지도교수와 심사위원장은 원주의과대학 소속으로 하고, 공동 지도교수의 경우 최소 1명은 원주의과대학 소속으로 한다.
③ 의생명과학트랙의 경우는 글로벌의생명학과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대학원위원회

제6조 (설치)
대학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제7조 (기능)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 학칙과 내규에 따라 대학원장이 위임하는 사항과 의학과 학사를 관장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대학원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2. 대학원 단기과정과 연수교육 과정의 시행
3. 대학원 교수와 대학원생의 학술활동 기획 및 시행
4. 대학원 입학정원 및 입학전형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원 자격시험 사정
6. 대학원생의 교육, 연구, 논문 심사에 관한 제반사항
7. 대학원생의 장학금 지급 및 복지에 관한 제반사항
8. 대학원 예산 결산
9. 기타 학장이 위임한 사항 및 학과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10. 대학원 학과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제8조 (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대학원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전임 교수 중 학장이 위촉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9조 (소위원회)

위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 (의결)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대학원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사항에 대하여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입학 및 등록

제11조 (입학지원 자격)

의학과 졸업자는 모든 트랙에 지원할 수 있으며, 비의학과 졸업자는 응용의학트랙에만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학위과정 입학자격)

대학원의 학위과정은 해당 자격이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1. 석사학위 과정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나 받을 예정인 자 또는 학사학

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2. 박사학위 과정 :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나 받을 예정인 자
3. 석사학위 과정과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이하 “석·박사통합 과정”이라 한다)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나 받을 예정인 자 또는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제12조의2 (일반전형과 외국인전형 방법 및 평가)

대학원 입학 전형에 관한 절차 및 세부 사항은 일반대학원 규정에 준하여 적용하며,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에 대한 평가는 학과 선발 기준표(별표)에 준하여 평가위원이 개별적, 비공개적으로 한다.

① 서류심사평가(석사·박사·석박사 통합학위과정)

구분	점수
학업계획서	100
대학성적	70
경력	30
합	200

② 구술시험평가(석사·박사·석박사 통합학위과정)

구분	점수
전공에 대한 지식	40
학문에 대한 열정과 성실성	30
전공에 대한 적성	30
합	100

③ 평가교수는 3인이상으로 선정하며 전형방법은 서류심사로 하되 필요에 따라 구술시험을 시행하여 최종합격인원을 결정할 수 있다.
④ 합격사정은 평가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사정원칙에 따라 합격 제청을 결정하고 학과 주임교수와 학장이 이를 인증 날인한다.
⑤ 공인영어성적에 관해서는 대학원 일반전형 및 외국인학생 입학에 관한 내규에서 정한 기준과 일반전형 및 외국인전형 모집요강을 원칙으로 한다.
⑥ 기타: 이 내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대학원 학칙 및 대학원 입학 일반전형에 관한 내규, 대학원 외국인학생 입학에 관한 내규를 준용한다.

제12조의3 (입시 서류 관리 및 인수인계)

① 주임교수는 입시관련 내규 제정, 혹은 개정 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주임교수는 입학전형과 관련한 대학원 입시 진행 공문 및 지침에 따른 입시서류 등 중요서류에 대한 보관을 책임진다.
③ 보직 교체시 주임교수는 입시 업무관련 인수인계서를 작성해서 후임 주임교수와 학인 후, 서명 보관한다.
④ 인수인계서에는 주임교수로 재직시 시행된 입학전형에 대해서, 지원현황, 면접응시현황, 선발현황, 등록현황 등의 주요내용을 담는다.

제13조 (군복무자)
군복무중인 대학원생은 소속 지휘관의 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중보건의도 군복무중인 대학원생에 준하여 적용한다. 단, 연구지도 등록 학생은 제외한다.

제 4 장 교 육 과 정

제14조 (교육과목의 구분)
교육과목은 공통필수과목, 전공필수과목, 전공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제15조 (이수학점)
① 석사학위 교육과정 : 공통필수과목을 포함하여 총 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학부과정에서 타학과를 졸업한 경우 필요시 지도교수의 승인 하에 의예·의학과 학부 과정에서 보충과목 3학점 이상 이수할 수 있다.
② 박사학위 교육과정 : 공통필수과목을 포함하여 총 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석사과정에서 타학과를 졸업한 경우 필요시 지도교수의 승인 하에 본 학과 석사과정에서 보충과목 3학점 이상 이수할 수 있다.
③ 석·박사통합 교육과정 : 공통필수과목을 포함하여 총 5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학부과정에서 타학과를 졸업한 경우 필요시 지도교수의 승인 하에 의예·의학과 학부과정에서 보충과목 3학점 이상 이수할 수 있다.

제16조 (교육과목의 변경, 폐지)
교육과목의 변경과 폐지는 교육과목 담당교수 또는 대학원 의학과 트랙책임교수의 요구에 따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7조 (담당교수 학점제한)
한 학기에 교수 한명이 담당 가능한 학점은 전공선택과목에 한하여 3학점으로 제한하되,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5 장 자 격 시 험

제18조 (자격시험의 구분)
자격시험은 영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구분한다.

제19조 (영어시험)
① 대학원은 대학원위원회가 주관하여 1년에 2회 영어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영어시험은 70점(100점 만점) 이상일 때 합격으로 인정한다.
③ 최근 2년간 시행된 공인인증 영어성적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였거나, 학당에서 개설되는 외국어자격시험 영어대체과정(중급)을 이수한 경우, 합격으로 한다.
④ 시험 시행 관련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20조 (종합시험)
종합시험은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구분하며, 영어시험을 통과한 대학원생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응시할 수 있다.
1. 석사학위 과정 : 2학기 이상 등록하고 최소 21학점을 이수한 자
2. 박사학위 과정 : 3학기 이상 등록하고 최소 30학점을 이수한 자
3. 석·박사통합 과정 : 5학기 이상 등록하고 최소 43학점을 이수한 자

제21조 (종합시험의 응시과목)
① 석사학위 과정 : 전공선택과목 2과목
② 박사학위 과정 : 전공선택과목 3과목
③ 석·박사통합 과정 : 전공선택과목 3과목

제22조 (종합시험의 시행)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은 같은 날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행 시간과 장소는 시험 1주일 전에 공고한다.

제23조 (예외사항)
석·박사통합 과정에서 석사학위만 취득하는 대학원생은 석사학위 과정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 6 장 학 위 논 문

제24조 (지도교수의 선정)
① 대학원생은 입학 후 1학기 내에 지도교수를 선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2인의 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다.
② 대학원생은 지도교수 선정 후 지도교수, 해당교실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지도교수 확인서를 교학파트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자문위원회 구성)
① 학위논문을 위한 연구계획서가 제출되면 지도교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문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석사학위 과정의 경우 총 3명, 박사학위 과정과 석·박

사통합 과정의 경우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지도교수가 위촉한다. 위원에는 1인 이상의 해당분야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26조 (연구계획서의 제출 및 승인)

① 자격시험에 합격한 대학원생은 연구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단, 연구계획서 제출 전 대학에서 실시하는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② 연구계획서는 한국연구재단의 일반연구비 신청양식에 따라 작성한 후 대학원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연구내용이 사람 또는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연구계획서 제출 시 관련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지도교수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연구계획서가 승인된 후 1개월 이내에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며, 대학원생은 해당 연구계획서를 발표하고 모든 자문위원은 자문보고서를 대학원위원회에 제출한다.

⑤ 대학원위원회는 제출된 자문보고서를 검토하여 연구계획서 내용의 수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학원생은 수정된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연구계획서 변경)

① 연구계획서의 자문을 받고 같은 내용 및 방법의 연구를 진행 중 제목을 일부 변경할 때에는 학위논문 제출 이전(예비심사를 마친 후)에 지도교수가 자문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대학원위원회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계획서의 자문을 받고 연구를 진행 중 다른 내용 및 방법의 연구로 변경할 때에는 연구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석사학위과정은 1학기, 박사학위과정은 2학기, 석·박사통합과정은 2학기 이상의 연구지도를 받아야 학위논문 제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③ 연구계획서의 자문을 받고 같은 내용 및 방법의 연구를 진행 중 지도교수의 변경이 부득이 할 때에는 지도교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28조 (학위논문 공개발표 및 심사)

① 학위논문 제출 전까지 박사학위논문 공개발표회에 2회 이상 출석하고 공개발표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박사학위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논문 제출자는 1회의 연구계획서 발표, 예비심사, 공개발표, 본심사를 받아야 한다. 학위논문 심사위원장은 자문위원들 중 1인을 자문위원회에서 위촉한다. 단, 석사학위 논문 제출자는 지도교수 주관 하에 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다.

③ 공개발표를 위해서 대학원생은 공개발표 신청서, 학위논문 초록 1부를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출해야 하며 공개발표 시에는 지도교수를 포함한 자문위원 4/5 이상이 참석하여야 한다.

④ 본심사는 의학과 운영내규 시행세칙의 학위논문 제출자격을 가진 자에 한하여 받을 수

있다.

⑤ 석·박사통합 과정에서 석사학위만 취득하는 대학원생은 석사학위 과정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29조 (학위논문 심의)

박사학위논문 제출자의 공개발표 이후에 자문위원과 대학원위원회 위원이 작성한 공개발표 평가보고서를 참고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위논문으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의한다. 단,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경우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위논문 제출자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 7 장 기 타

제30조 (내규의 개정)

이 내규를 개정할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의 승인으로 시행한다.

제31조 (세부사항)

이 운영내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이 운영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제 규정을 준용한다.
2. 이 운영내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운영내규 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3. 이 개정내규「제17조, 제18조, 제19조 ①항, ③항, ④항, ⑤항, 제24조 ①항, ②항, 제25조 ②항, 제27조 ②항, 제28조 ②항」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4. 이 개정내규「제3조, 5조, 19조」는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내규「제4조, 5조, 7조, 11조, 12조, 14조, 15조, 16조, 17조, 19조, 20조, 21조, 23조, 24조, 25조, 26조, 27조, 28조, 29조 개정」는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6. 이 개정내규 「규정명, 제1조 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제19조 ③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2010년 3월 1일 입학자부터는 개정된 영어시험 기준을 적용한다.
7. 이 개정 내규「제12조의2 신설, 제15조 개정」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8. 이 개정 내규「제2조, 제20조 제1호, 제24조 제②항」는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2020-2학기 재학생부터 적용한다.
9. 이 개정 내규「제2조, 제7조 조문·제1호·제4호 내지 제9호 개정 및 제10호 신설, 제8조 제목·제①항 개정 및 제③항 신설, 제10조 제①항·제③항 신설, 제12조의2 제목·조문 개정 및 제③항 내지 제⑥항 신설, 제12조의3 신설」는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2021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10. 이 개정 내규「제4조, 제2장 장제목, 제6조, 제19조 제③항 개정」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원주) 의학과 운영내규 시행세칙

제 정 2010. 03. 01.
개 정 2025. 07. 01.

제1조(목적)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칙을 준용하되 일반대학원(원주) 의학과 운영내규에 따라 특별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시행세칙을 정한다.

제2조(교육과정 및 이수학점)
석사학위 과정, 박사학위 과정, 석·박사 통합 과정의 전공별 이수학점 및 수강해야 할 과목은 아래와 같다.(별첨자료 참조)

1. 석사학위 교육과정
   가. 의생명과학트랙 전공자는 글로벌의생명학과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에 준하여 수강토록 한다.
   나. 임상의학트랙 전공자는 공통필수과목 6학점, 전공필수과목 6학점을 포함하여 총 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공통필수과목은 연구윤리, 의과학커뮤니케이션, 의과학연구방법론으로 구성된다.
   다. 응용의학트랙 전공자는 공통필수과목 6학점, 전공필수과목 6학점을 포함하여 총 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공통필수과목은 연구윤리, 의과학커뮤니케이션, 응용의학연구방법론으로 구성된다.
   라. 의학교육학트랙 전공자는 공통필수과목 4학점, 전공필수과목 12학점을 포함하여 총 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공통필수과목은 연구윤리, 의과학커뮤니케이션으로 구성된다.
   마. 융합형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참여 대학원생은 공통필수 6학점, 전공필수 18학점을 포함하여 총 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 한다. 공통필수과목은 연구윤리, 의과학커뮤니케이션, 의과학연구방법론(응용의학연구방법론)으로 구성된다.
2. 박사학위 교육과정
   가. 의생명과학트랙 전공자는 글로벌의생명학과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에 준하여 수강토록 한다.
   나. 임상의학트랙 전공자는 공통필수과목 6학점, 전공필수과목 6학점을 포함하여 총 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공통필수과목은 연구윤리, 의과학커뮤니케이션, 의과학연구방법론으로 구성된다.
   다. 응용의학트랙 전공자는 공통필수과목 6학점, 전공필수과목 6학점을 포함하여 총 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공통필수과목은 연구윤리, 의과학커뮤니케이션, 응용의학연구방법론으로 구성된다.
   라. 의학교육학트랙 전공자는 공통필수과목 4학점, 전공필수과목 12학점을 포함하여 총 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공통수과목은 연구윤리, 의과학커뮤니케이션으로 구성된다.
   마. 본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에서 공통필수와 전공필수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전공선택과목을 이수하여 전체 학점을 충족시켜야 한다.
   바. 융합형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참여 대학원생은 공통필수 6학점, 전공필수 15학점을 포함하여 총 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 한다. 공통필수과목은 연구윤리, 의과학커뮤니케이션,

의과학연구방법론(응용의학연구방법론)으로 구성된다.

3. 석·박사 통합 교육과정
   가. 의생명과학트랙 전공자는 글로벌의생명학과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에 준하여 수강토록 한다.
   나. 임상의학트랙 전공자는 공통필수과목 6학점, 전공필수과목 6학점을 포함하여 총 5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공통필수과목은 연구윤리, 의과학커뮤니케이션, 의과학연구방법론으로 구성된다.
   다. 응용의학트랙 전공자는 공통필수과목 6학점, 전공필수과목 6학점을 포함하여 총 5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공통필수과목은 연구윤리, 의과학커뮤니케이션, 응용의학연구방법론으로 구성된다.
   라. 의학교육학트랙 전공자는 공통필수과목 4학점, 전공필수과목 12학점을 포함하여 총 5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공통필수과목은 연구윤리, 의과학커뮤니케이션으로 구성된다.
   마. 융합형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참여 대학원생은 공통필수 6학점, 전공필수 31학점을 포함하여 총 5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 한다. 공통필수과목은 연구윤리, 의과학커뮤니케이션, 의과학연구방법론(응용의학연구방법론)으로 구성된다.

제3조(영어시험)

1. 대학원이 주관하는 교내영어시험은 매년 6월과 12월 시행한다.
2. 영어시험의 관련된 사항은 '영어시험소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3. 대학원에 재적하는 내국인이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를 위해 개인별로 교학파트에 신청하고 신청기간 내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 불합격 횟수와 상관없이 응시자격은 유지된다.
5. 박사(통합)는 TOEFL PBT 550점 (CBT 230점, IBT 80점) 이상, TOEIC 730점 이상, TEPS 638점 이상, IELTS 5점 이상을 취득한자는 성적표 원본을 제출한 경우 합격으로 하며 석사는 TOEFL PBT 500점 이상, TOEIC 625점 이상, TEPS 600점 이상, IELTS 4.5점 이상을 취득한자는 성적표 원본을 제출한 경우 합격으로 한다. 성적표의 유효기간은 제출일을 기준하여 2년 이내로 한다.

제4조(영어시험소위원회)

1. 대학원위원회 위원장이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영어시험의 문항출제, 시험감독, 시험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영어시험의 문항은 객관식·주관식으로 구성한다.

제5조(구술시험)

1. 구술시험 위원은 해당 대학원생의 전공선택과목 담당교수 2-3인으로 구성된다.
2. 구술시험 결과는 익일에 발표한다.
3. 구술시험 불합격자는 1주일 후 재시험을 치를 수 있다.

제6조(연구계획서의 제출 및 승인)

1. 연구계획서는 연구의 필요성, 연구목표 및 내용, 연구의 추진전략 및 방법,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순으로 연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

히 작성한다.
2. 임상시험에 대한 연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임상연구자체평가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3. 박사학위 및 석·박사 통합과정의 대학원생은 연구계획서가 승인 된 후 1개월 이내에 지도교수를 포함한 자문위원의 4/5 이상이 참석하는 연구계획 공개발표세미나"에서 발표하여야 하며, 모든 자문위원은 자문보고서를 대학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자문보고서의 제출)
자문위원회를 개최한 후 2주일 이내에 자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학위논문 제출자격)
각 학위 과정의 학위논문 제출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원 취득학점의 총 평량 평균이 3.0이상인 자
2. 석사학위 과정: 연구계획서의 승인 후 1학기 이상 연구지도를 받은 4학기 이상의 등록자(단, 이종욱펠로우십 프로그램 석사학위과정 의학교육학트랙 2021-1학기 입학생은 제외)
3. 박사학위 과정: 연구계획서의 승인 후 2학기 이상 연구지도를 받은 5학기 이상의 등록자로, 지도교수가 교신저자, 대학원생이 제 1저자 원저로서 학위기간 중 연구주제와 관련한 SCI급 논문(SCI, SCI-E, SSCI, A&HCI 논문) 1편을 게재 또는 승인 받은자
4. 석·박사 통합 과정: 연구계획서의 승인 후 2학기 이상 연구지도를 받은 6학기 이상의 등록자로, 지도교수가 교신저자, 대학원생이 제 1저자 원저로서 학위기간 중 연구주제와 관련한 SCI급 논문(SCI, SCI-E, SSCI, A&HCI 논문) 1편을 게재 또는 승인 받은자

제9조(장학금 지급)
대학원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관해서는 별도의 기준에 의해 운영한다.

- 부 칙 -

1. 이 시행세칙은 2010년 3월 1일 입학한 대학원생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2. 본 시행세칙은 2005. 9. 1부로 제정됨.
3. 본 시행세칙은 2009. 9. 30부로 일부 개정됨.
4. 본 시행세칙은 2012. 8. 30부로 일부 개정됨.
5. 본 시행세칙은 2013. 5. 31부로 일부 개정됨.
6. 본 시행세칙은 2014. 3. 18부로 일부 개정됨.
7. 본 시행세칙은 2018. 6. 1부로 일부 개정됨. 단 교육과정표는 별도로 정한다.
8. 본 개정 시행세칙 「제2조 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2010년 3월 1일 입학자부터는 개정된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한다.
9. 본 개정 시행세칙「제2조, 제8조, 별표 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2020-2학기 재학생부터 적용한다.
10. 이 개정 시행세칙 「제2조, 제3조, 별표 개정」 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2021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11. 이 개정 시행세칙「제3조 제5호 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전공별 교육과정표

전공	과목분류	교과목	비고
임상의학 트랙	공통필수과목	▸ 연구윤리 ▸ 의과학커뮤니케이션 ▸ 의과학연구방법론	○ 각2학점
	전공필수과목	▸ 전공실습 1, 2, 3 (석사, 통합과정) ▸ 전공실습 4, 5 (통합과정, 박사) ▸ 전공실습 6 (박사) ▸ 응용의학세미나 ▸ 임상생리학세미나 ▸ 응급의료세미나 ▸ 외상중환자의학세미나 ▸ 생활속내과학세미나 ▸ 종양외과학세미나 ▸ 신경정신과학세미나 ▸ 미래융합의료세미나 ▸ 보건의료정책세미나 ▸ 연구지도	○ 전공실습 3학점 ○ 세미나 3학점 ○ 연구지도: 학점 없음
	전공선택과목	▸ 임상교실별 개설과목	○ 각3학점
응용의학 트랙	공통필수과목	▸ 연구윤리 ▸ 의과학커뮤니케이션 ▸ 응용의학연구방법론	○ 각2학점
	전공필수과목	▸ 전공실습 1, 2, 3 (석사, 통합과정) ▸ 전공실습 4, 5 (통합과정, 박사) ▸ 전공실습 6 (박사) ▸ 응용의학세미나 ▸ 임상생리학세미나 ▸ 응급의료세미나 ▸ 외상중환자의학세미나 ▸ 생활속내과학세미나 ▸ 종양외과학세미나 ▸ 신경정신과학세미나 ▸ 미래융합의료세미나 ▸ 보건의료정책세미나 ▸ 연구지도	○ 전공실습 3학점 ○ 세미나 3학점 ○ 연구지도: 학점 없음
	전공선택과목	▸ 의료인문학 ▸ 의료경영학 ▸ 운동생리학 ▸ 스포츠의학 ▸ 의료관리학 ▸ 최신심리학 ▸ 보건학개론 ▸ 의료윤리학 ▸ 재생의학 ▸ 역학 ▸ 정신보건학 ▸ 사회학 ▸ 기타	○ 각3학점 ○ 열거한 과목들은 예시임
의학교육 학트랙	공통필수과목	▸ 연구윤리 ▸ 의과학커뮤니케이션	○각2학점
	전공필수과목	▸ 의학교육세미나 ▸ 의학교육과정개발 ▸ 의학교육연구방법론 ▸ 의학교육개론 ▸ 연구지도	○각3학점 ○연구지도: 학점 없음
	전공선택과목	▸ 의학교육인증평가 ▸ 의학교육의역사와철학 ▸ 인문사회의학 ▸ 교육평가의원리와이해 ▸ 기타	○각3학점 ○열거한 과목들은 예시임

<참고>

1. 임상의학과 응용의학의 전공필수는 전공실습과 세미나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공실습은 대학원생이 소속된 교실에서 개설된 개설과목을 선택하면 됨
2. 응용의학의 세부전공과목은 정신보건의학(민성호), 인문의학(예병일), 재생의학(김성훈), 법의학(엄민섭), 스포츠의학(공인덕), 예방의학(고상백), 임상의용공학(김성훈), 전인치의학(정승미),

응급의료체계, 자동차의학(이강현), 건강노화(고상백), 국제보건(이규재), 전임상의학(남궁준)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세부전공을 추가할 수 있음.

3. 공통필수과목은 예병일(연구윤리), 김수기(의과학커뮤니케이션), 조원길(의과학연구방법론), 김춘배(응용의학연구방법론)가 담당함.
4. 전공필수과목은 기존에 개설된 과목을 정리하고 신설과목을 추가하여 확정할 것임.

임상의학전공 및 응용의학전공 공통필수과목 개요

국문교과목명	영문교과목명	학점	학정번호	수강학기	개요
연구윤리	Research Ethics	2	WCG6001-MM	봄	실험윤리 및 동물윤리 저작권윤리/연구노트윤리
의과학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on in Medical Science	2	WCG6002-MM	봄	영어논문쓰기 및 발표준비 및 발표기법
의과학연구방법론	Methodology for Medical Research	2	WCG6003-MM	가을	의학 및 의생명 연구를 위한 방법론
응용의학연구방법론	Methodology for Applied Medical Research	2	WCM6004-MM	가을	응용의학 및 의학통계 연구를 위한 방법론

융합형의사과학자양성사업 교육과정

학기	종별	이수과목 (학점)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1학기	공통필수	연구윤리(2)	연구윤리(2)	연구윤리(2)
		의과학커뮤니케이션(2)	의과학커뮤니케이션(2)	의과학커뮤니케이션(2)
	전공필수	융합의학저널클럽(2)	융합의학저널클럽(2)	융합의학저널클럽(2)
	과정필수	융합의학세미나1(3)	융합의학세미나1(3)	융합의학세미나1(3)
		융합의학실습1(3)	융합의학실습1(3)	융합의학실습1(3)
	학점 소계	12	12	12
2학기	공통필수	의과학/응용의학연구방법론(2)	의과학/응용의학연구방법론(2)	의과학/응용의학연구방법론(2)
	전공필수	융합의학콜로키움 (2)	융합의학콜로키움 (2)	융합의학콜로키움 (2)
	과정필수	융합의학세미나2(3)	융합의학세미나2(3)	융합의학세미나2(3)
		융합의학실습2(3)	융합의학실습2(3)	융합의학실습2(3)
	학점 소계	10	10	10
3학기	전공필수	의과학연구지도(2)	의과학연구지도(2)	의과학연구지도(2)
	과정필수	융합의학실습3(3)	융합의학실습3(3)	융합의학세미나3(3)
				융합의학실습3(3)
	전공선택	선택 1과목(3)	선택 1과목(3)	선택 1과목(3)
	학점 소계	8	8	11
4학기	과정필수			융합의학세미나4(3)
				융합의학실습4(3)
	전공선택			선택 2과목(6)
	학점 소계			12
5학기	과정필수			융합의학실습5(3)
	전공선택			선택 2과목(6)
	학점 소계			9
총계		30 또는 31	30 또는 31	54 또는 55

단, 응용의학트랙(예방의학 등 전공자)은 의과학연구지도 대신 선택 1과목 추가